

CR 2007 - 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2007. 6.

보 험 개 발 원

CR 2007 - 3

CEO
Report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2007. 6.

류 건 식 · 이 경 희 · 김 동 겸

보 험 개 발 원

CEO Report는 보험산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집중분석하여,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 요약 >

- 예금보험제도 개선안(금융학회 용역결과)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회사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함.
 - 즉 은행권과 보험권의 특성이 매우 상이함에 불구하고 지나치게 예금보험제도의 획일성을 강조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은 결여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함.
 - 첫째, 보험사 고유리스크인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통해 목표기금액 추정이 필요함.
 - 둘째, 보험권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절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
 - 셋째, 차등요율제는 적절한 차등지표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할 것임.
 - 넷째,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보상한도의 이원화문제가 목표기금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예금보험제도는 각 금융권별 차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트렌드를 반영, 정합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목 차 >

I. 검토배경	1
II.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2
III.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7
IV. 예금보험제의 개선 과제	16

I. 검토 배경

-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1998년 예금보험제도가 통합된 이후, 예금보험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예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특히 보험권은 보험요율의 인상, 산출기준의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 부담은 가중된 반면, 보상한도 측면에서는 보험계약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노출됨.
 - 보험개발원은 2005년 보험정책세미나 및 2006년 예금보험제도 공청회(최경환 의원 공동) 등을 개최하여 보험권의 예금보험요율 부담성을 지적함.

- 이에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금보험제도 개선작업이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됨.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금융학회에 목표기금제/차등요율제 도입에 초점을 둔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 5월 16일 용역결과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함.

- 따라서 본 보고서는 금융학회 예금보험제 개선안(이하 개선안으로 칭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험산업 측면에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즉 보험계약의 특성 등을 얼마나 충분히 반영하여 보험권의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함.

II.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

1. 목표기금제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한 특별기여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목표기금제 적용은 권역별로 분리 운영하는 복수기금방식 채택
 - 보험권 (생보권과 손보권 분리), 은행권, 증권권은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를 도입·운용하되, 저축은행권은 적자보전방안 마련 후 제도 도입 검토

- 목표기금 수준은 해당 권역의 운영비용과 함께 기대손실과 예상외 손실의 일정수준을 감당하는 규모로 설정
 - 목표기금은 금융권간 형평성을 고려, VaR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
 - 기금파산을 초래하는 극히 예외적인 손실이 발생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사후각출방식으로 부담

- 보험권의 경우 예보료 부과대상은 보호한도내 책임준비금, 보호한도는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목표기금 추정
 - 단, 해약사태 가능성 (시스템리스크 수준), 공동보험 도입문제는 타 금융권과의 일관성 측면에서 미반영

<표Ⅱ-1> 목표기금제 추정 가정 및 분석 방법(보험권)

구분		세부가정
제 가 정	예보료 부과	보호한도내 책임준비금
	보호 한도	최고 5,000만원 (의무보험: 보험사고발생시 1억원까지 보호)
	공동보험, 보험특성	미반영(타 금융권과의 일관성)
	사후각출방식	부보예금 × 일정한 보험요율
분석모형		- 계량 모형(EDF모형과 CreditMetrics모형) 에 따라 목표기금 규모 추정 - 적립목표 = 손실분포 기준 99% VaR 값

□ 분석 결과, 권역별 요율체계 및 목표기금 도달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은행권은 회수율 평균 0.85 및 표준편차 0.15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를 보호예금의 2.409%로 추정함.
 - 목표기금액 현가는 5조 7천억원, 보험요율을 부보예금의 0.1%로 정할 경우 목표기금 도달에 11년 소요 정도 소요
- 증권권의 목표기금 규모는 고객예탁금의 목표기금 규모와 합병증권사 목표기금 규모의 가중평균의 1.622%로 추정함.
 - 목표기금액 현가는 650억원, 보험요율을 고객예탁금에 0.1% 그리고 CMA 및 발행어음에 0.2% 부과할 경우 목표기금 도달에 4년 정도 소요
- 생보권은 회수율 평균 0.8 및 표준편차 0.2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를 보호예금의 2.046%로 추정함.
 - 목표기금액 현가는 2조 9천억원, 보험요율을 책임준비금의 0.2% 수준으로 정하면 목표기금 도달에 12년 정도 소요

- 손보권은 회수율 평균 0.8 및 표준편차 0.2라는 가정 하에, 목표기금 규모를 보호예금의 2.449%로 추정함.
- 목표기금액 현가는 6천억원, 보험요율을 책임준비금의 0.25% 수준으로 정하면 목표기금 도달에 11년 정도 소요

<표Ⅱ-2> 권역별 목표기금률 및 기금액 추정 결과

(단위: 억원, %, 년)

구분	목표기금액(현가)	목표기금율	예상손실율	도달기간		보험요율	현재적립금
				손실발생시	손실미발생시		
은행	57,238	2.409	0.124	11	6	0.10	21,820
증권	1,237	1.210	0.04035	3	2	0.10	1,147
합중*	560	3.000	0.100	4	3	0.20	350
생보	29,016	2.046	0.130	12	5	0.20	15,356
손보	6,065	2.449	0.121	11	6	0.25	3,084

주: 1) 목표기금율은 보호예금 기준, 보험요율은 부보예금(보호대상예금으로 보험은 책임준비금) 기준

2) *는 2개 합병증권사의 CMA 및 발행어음에 대한 목표기금 규모임

2. 차등요율제

- 저축은행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에 대해 차등요율제와 목표기금제를 2009년부터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함.
- 차등요율제는 감독당국의 경영실태 평가와 부보기관의 재무건전성 변수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부보기관들의 건전성 정도와 차등요율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시행하되, 보험요율 등 일체의 정보를 대외비 처리하도록 함.

- 도입 초기에는 차등 폭을 작게 하여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기로 함.

□ 생보사는 21개사를 대상으로, 총 32개 지표 중 지급여력비율 등 6개 선정지표를 통해 분석한 반면, 손보사는 9개사를 대상으로 총 40개 지표중 지급여력비율 등 7개 선정지표를 통해 분석하였음.

- 지표별로 5개 등급구간을 설정하고 각각의 등급내에 20%씩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임계치 설정
 - 지표가중치 설정 : 지표가중치를 균등하게 배분

□ 보험권의 경우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3등급을 기준으로 표준요율의 -5%(1등급), -2.5%(2등급), 0(3등급), +2.5%(4등급)에 해당하는 할인·할증율을 적용(최대 차등폭 7.5%)

- 즉 표준보험요율을 산출하여, 표준보험요율에 할인·할증률을 가감하여 보험사별 차등요율을 적용
 - 차등보험요율 = 표준보험요율 × (1±할인·할증률)

□ 분석결과, 고정요율을 생보 0.2%, 손보 0.25%로 하고, 최대 차등폭 7.5%를 적용할 경우, 2006년 9월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이 생보 57억원, 손보 25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II -3> 차등요율제 추정가정 및 분석방법 (보험권)

구분		세부가정
제 가 정	분석대상	생보 21개사, 손보 9개사(온라인사 제외) 분기데이터
	선정지표	- 생보 6개 지표 · 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비율, 부실자산비율, 위험가중자산비율, 보험영업이익율, 예정사업비 대비 총실제사업비 - 손보 7개 지표 · 지급여력비율, 수정지급여력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고정이하여신비율, 합산비율, 영업총이익률, 해약환급금비율
	등급구간	- 지표별 5개 등급구간 설정(20%씩 균일분포 가정)
	가중치설정	- 지표별 가중치를 균등하게 배분
분석모형		- 지표선정모형 · 모수적 분석방법 및 비모수적 분석방법 적용 - 지표분석모형 · Kendall의 tau와 Mann-Whitney U분석법, 로짓모형 등

<표 II -4> 보험권의 예금보험료 차등보험요율

구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최대차등폭
생보	할인할증율	△5%	△2.5%	-	+2.5%	7.5%
	보험요율	0.19%	0.195%	0.2%	0.205%	0.015%p
손보	할인할증율	△5%	△2.5%	-	+2.5%	7.5%
	보험요율	0.2375%	0.24375%	0.25%	0.25625%	0.01875%p

Ⅲ.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1. 분석모형의 적정성

- 보험사의 경우, 보험리스크 등 고유리스크 존재로 인해 보유 계약 속성 등을 반영한 계리적 가치모형, 동태적 재무분석 모형 등을 통해 보험사 파산 및 가치를 평가함.
 - 즉 보험회사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재가치 평가모형 (Embedded Value Model) 및 계리적 가치평가 모형 (Appraisal Value Model)이 주로 사용됨.
 - 최근에는 부채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통합한 동태적 재무 분석모형 (Dynamic Financial Analysis)이 많이 활용됨.
- 개선안의 분석모형은 신용리스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은행권의 목표기금 추정시 사용될 뿐, 보험사의 목표기금 추정 모형으로 사용되지 않음.
 - 실제 보험권 예금보호기금 제도가 있는 OECD 국가의 경우, 개선안과 같은 분석모형을 통해 보험권의 목표기금을 추정한 사례는 없음.
- 이와 같은 보험권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확일적인 분석모형***을 통해 보험권의 목표기금을 추정한 개선안은 근본적으로 분석모형 설정상의 오류가 존재함.
 - 분석모형 설정상의 오류 이외에도 투입변수 추정 오류마저 존재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됨.

* 분석모형: EDF(Expected Default Frequency) 및 CreditMetrics모형

<표Ⅲ-1> 분석모형의 설정 및 투입변수 추정 오류

분석모형 설정 오류	투입변수 추정 오류
- 획일적인 분석모형 적용 · 보험사 리스크 특성 배제 등 - 국제적 정합성 결여 · 보험권, VaR모형 적용 전무	- 주가데이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생보사에 대해 타 금융기관 주가자료를 무리하게 적용 - 객관적 근거없이 보험사의 투입변수 값이 은행보다 불리하게 적용 - 분석가정의 신뢰성(객관성) 결여 · 높은 파산확률, 낮은 회수율, 높은 표준편차, 낮은 자유도 등

□ 즉 부도확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채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생보사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점 등이 **분석상의 오류로 지적됨.**

○ 또한 파산확률, 회수율 평균 및 표준편차, 예상손실률 등과 관련된 제가정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존재함.

□ 결국 적절하지 못한 분석모형 설정과 더불어 객관성이 결여된 투입변수의 사용 등으로 **분석모형의 적정성 문제를 초래, 보험권이 수궁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됨.**

2. 목표기금의 적정성

□ 선진국의 목표기금 규모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생명보험은 대체로 3,000억원 내외로 조성되고 있으며 손

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실정임.

- 이처럼 보험권의 경우 목표기금이 3,000억원 이하에서 조성되고 있는 이유는 은행권에 비해 시스템리스크가 작아 초기에 많은 소요자금이 필요 없기 때문임.

<표Ⅲ-2> OECD 회원국의 목표기금 비교(사전적립국가)

국가	시장 ¹	보호기금	적립 ²	목표기금	산출/배분기준	요율 ³
캐나다	8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 ⁴ Y ⁴	요구 자본 수입보험료	1.33% 0.75%
일본	2	생명보험 손해보험	■ ■	Y ⁶ Y ⁶	보험료와 준비금 고려	-
프랑스	4	생명보험	■	Y ⁵	책임준비금	0.05%
한국	7	통합기금	■	-	보험료와 준비금의 평균	0.3%
노르웨이	26	손해보험 신용보험	■ ■	Y ⁷ Y ⁷	수입보험료 수입보험료	1.0%

- 주: 1) 2005년 세계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기준 점유율 순위
 2) 기금의 적립방식: ■ 사전적립, ▣ 일부 사전적립(최소자금)
 3) 사전각출 비율 또는 사후각출 한도.
 4) 사전적립형 최소기금 설정. 생명보험은 CAD 1억, 손해보험도 특별보험료 각출. 영국도 대기자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나 용도가 불분명하여 분류에서 제외.
 5) 목표기금은 EUR 2억7천만, 그 중 일부는 보험사 내부유보 형태로 적립.
 6) 목표기금은 생명보험 JPY 4,000억, 손해보험 JPY 500억.
 7) 직전년도 수입보험료와 당년도말 책임준비금의 산술평균.

□ 프랑스 생명보험기금의 경우 약 3,370억원(EUR 2억 7천만), 미국 뉴욕주 약 1,860억원(USD 2억) 수준의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프랑스는 적립기금의 일부를 보험사 내부에 유보하도

록 함으로써 실제 부담은 덜하다고 할 수 있음.

- 사후각출방식을 채택하는 캐나다 생명보험기금에서도 즉시 대응기금으로서 약 876억원(CAD 1억)의 최소기금을 보유하고 있음.
-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목표기금제를 도입한 일본은 생명보험 약 3조원(JPY 4,000억), 손해보험 약 3,800억원(JPY 500억)을 목표기금을 설정하고 있으나, 시장규모를 고려할 필요 존재

□ 이에 반해, 개선안은 현가 기준으로 생보 2조 9,016억원(목표기금율 2.046%), 손보 6,065억원(목표기금율 2.447%)의 목표기금액을 산정함.

- 이와 같은 목표기금액은 외국 수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 특히 우리나라보다 시장규모가 월등히 큰 일본의 목표기금액 3조원 수준과 비교할 경우, 2조 9천억원의 목표기금액은 높게 책정된 것임.
-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생명보험의 시장규모는 일본의 17.4%에 불과하지만, 목표기금 규모는 95.2%에 달함.
(일본의 수입보험료 4,765억 달러,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829억 달러)

* 보험개발원의 목표기금액 추정 :

2005년 기준 생보사 2개사 파산시 목표기금액 5,400억원, 손보사 2개사 파산시 목표기금액 2,424억원으로 추정함

- 프랑스의 경우 목표기금 수준이 책임준비금의 0.0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목표기금 적립율은 프랑스보다 40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특히 목표기금 규모가 책임준비금에 연동되어 결정(책임준비금×목표기금율)되므로, 책임준비금 규모가 증가하면 할수록 보험회사들의 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즉 개선안에서는 책임준비금 증가율을 7%로 가정하였지만, 실제 경험치는 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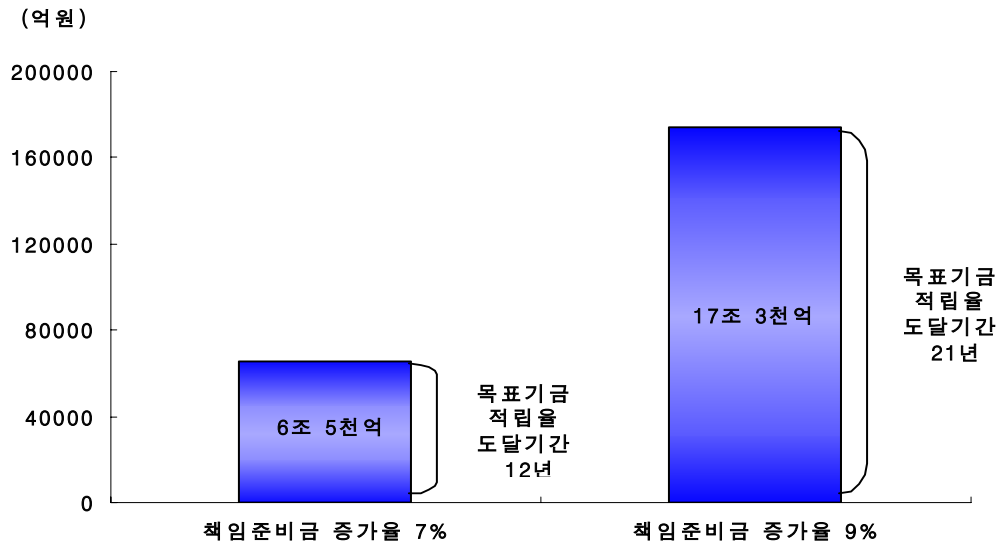
<표Ⅲ-3> 보험권의 책임준비금 증가 추이

(단위: 조원, %)

	FY2002	FY2003	FY2004	FY2005
생명보험	134	149	165	180
증가율	13.6	11.2	11.2	9.1
손해보험	23	25	28	32
증가율	11.3	8.2	13.7	13.0

- 책임준비금 증가율 7% 가정시 : 생보 목표기금율 2.046%에 의 도달연수는 12년, 목표기금액은 6조 5,330억원
- 책임준비금 증가율 9% 가정시 : 생보 목표기금율 2.046%에 의 도달연수는 21년, 목표기금액은 17조 2,948억원
- 따라서, 실제 책임준비금 증가율을 감안할 경우 개선안보다 보험권이 적립해야 하는 목표기금액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목표기금액 적정성 측면에서 선진국과 많은 괴리가 존재함.

<그림Ⅲ-1> 책임준비금 증가에 따른 목표기금 및 도달기간



3. 차등요율제의 적정성

- 2009년부터 목표기금제와 차등요율제를 동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인프라 및 리스크 평가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리한 일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차등요율제 도입문제는 목표기금제도가 도입된 연 후에 보험회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될 필요성이 있음.
- 보험계약자 보호기금을 시행하고 있는 OECD국가 중 차등요율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즉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적용국가 9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모두 차등요

율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 2005년말 현재 차등요율제를 도입한 29개국은 은행에 대해서만 차등요율제를 적용함.

<표Ⅲ-4> OECD국가 차등요율제 비교(은행권/보험권)

	은행권	보험권
OECD (30개국)	28개국 (예금보험제 시행)	9개국 (보험계약자 보호기금 시행)
차등요율제	12개국	시행국가 없음

-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보험권에 차등요율제를 적용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차등요율제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차등보험요율 결정을 위한 적정지표 선정 및 적정 차등화 등급 산정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제 적용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결국 차등요율제도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며, 보험권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인식이 우선되어야 함.

- 특히 보험부채 시가평가의 미실시, EU 지급여력제도를 근간으로 계산되는 지급여력비율은 차등화지표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존재
- 이에 RBC, Solvency II와 같은 정교한 재무건전성 평가체제로 이행한 후 차등요율제 도입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보상한도의 적정성

- 개선안은 보험권 보상한도를 종전처럼 5,000만원으로 설정, 목표기금액 등을 추정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보상수준은 해약환급금 측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인 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로 기대하는 보험금으로는 부족한 수준임.
- 보험권의 경우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하는 경우, 생명보험은 전체 계약자의 98.7%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보호대상금액의 84.3%까지 보장이 가능함.
 -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2,000만원의 보상한도 수준은 전체 계약자의 99.2%가 보호 받고, 전체 보호대상금액의 82.8%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현행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 인하가 필요함.

<표Ⅲ-5> 보험대상예금에 대한 예금자 및 금액구성비 비교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예금자(%)	금액(%)	예금자(%)	금액(%)	예금자(%)	금액(%)
2,000만원 이하	96.6	24.2	98.7	84.3	99.2	82.8
3,000만원 이하	2.2	9.4	0.9	7.2	0.5	6.0
5,000만원 이하	0.6	5.7	0.2	3.6	0.2	4.3
5,000만원 초과	0.7	60.7	0.2	4.9	0.1	6.9

주: 은행은 2000년 6월말 기준, 보험권은 FY2004기준

- 따라서 선진국처럼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인하하는 반면, 보험금 기준 보상한도는 인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상한도를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 캐나다 등의 보호기금은 해약환급금 보상한도를 낮추고 보험금 기준은 높이는 이원적 보상체계를 운용함.
 - 즉 보험금 기준으로는 30만달러(미국)와 20만달러(캐나다)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해약환급금 기준은 이 보다 낮은 10만달러(미국)와 6만달러(캐나다)로 설정함.

- 보상한도 이원화는 소액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면서 보험사고시 위험보장과 고액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무함.
 - 이와 같은 보상한도 조정과 목표기금액을 상호연계시킴으로써 적정 보상한도를 고려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

IV. 예금보험제의 개선 과제

-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의 특성, 보험사의 고유리스크, 시스템리스크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보험산업에 적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

- 따라서 예금보험제도 개선은 은행 중심의 획일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각 금융권별 특성이 적극 반영됨과 아울러 국제적 정합성이 추구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기금의 운영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 대한 획일적 운영기준보다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모형,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보상한도 등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첫째, 보험사에 고유한 보험리스크 등 보험회사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목표기금 산출모형 적용을 통해 목표기금액을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즉, 보험사 자산리스크 이외에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재보험리스크 등을 반영하여 목표기금을 산출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보험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은 대체로 최소목표기금액을 적립하고 있음을 감안, 적절한 목표기금액 산정이 요구됨.
 - 따라서, 확실적인 목표기금 추정보다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 정도 및 선진국의 목표기금액 설정 사례 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셋째, 차등요율제는 적절한 차등지표 선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목표기금제가 도입된 연후에 보험시장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즉 보험사의 리스크를 차등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차등화 지표가 마련되고 보험사의 충분한 의견수렴 연후에 차등요율제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넷째, 해약환급금 기준 보상한도는 낮추는 반면, 보험금 보상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보상한도의 이원화 문제가 목표기금제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즉 적정 보상한도를 고려한 목표기금액 추정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한 예금보험요율의 설정이 바람직함.
- 결국 금융학회의 개선안은 합리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므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통합기금 내의 일관성과 개별 금융권에 대한 특수성이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아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노력이 요구됨.

<부록 1> 당기순익 대비 예금보험료 비중 비교

(단위: 억원, %)

		2004	2005	2006	평균
은행	부보예금	4,789,970	4,949,620	4,918,120	4,885,903
	당기순익(A)	63,737	92,207	88,011	81,318
	예금보험료(B)	4,960	4,869	4,987	4,939
	비중(B/A)	7.8	5.3	5.7	6.2
보험회사	부보예금	1,277,540	1,371,400	1,508,930	1,385,957
	당기순익	32,525	32,965	26,863	30,784
	예보료	3,403	3,737	4,059	3,733
	비중(B/A)	10.5	11.3	15.1	12.3
생명보험회사	부보예금	1,061,370	1,133,280	1,237,740	1,144,130
	당기순익(A)	21,051	20,972	16,476	19,500
	예금보험료(B)	2,832	3,109	3,362	3,101
	비중(B/A)	13.5	14.8	20.4	16.2
손해보험회사	부보예금	216,170	238,120	271,190	241,827
	당기순익(A)	11,474	11,993	10,387	11,285
	예금보험료(B)	571	628	697	632
	비중(B/A)	5.0	5.2	6.7	5.6

주: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연도 (익년 3월말) 기준이며, 2006 당기순익은 추정치

자료: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CEO Report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발 행 일	2007년 6월 일
발 행 인	김 창 수
편 집 인	유 형 균
발 행 처	보 험 개 발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인 쇄 소	(주)유성사
	대표전화 837 - 0700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재무연구팀(☎368-4237, 4165, 4162)으로 하여 주십시오.